

제 2371호
2015. 06. 03.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5-37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2
제2015-38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5
제2015-3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9
제2015-40호: 만리제1주택재개발 정비계획·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1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3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1. 사 업 명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2. 위치 및 규모 : 265개 점포
 - 신당역·청구역 주변(60개), 청구역~약수역(130개),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75개)
 -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3. 사업내용 : 불법간판을 거리 특색에 맞는 우수한 간판으로 개선
4.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1월까지
5. 사업방법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자율추진
6. 소요예산 : 531,100천원(시비 251,100천원, 구비 280,000천원)
 -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0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의 개·폐업 및 휴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추진내용
 - 거리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간판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설치
 -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 점포주, 전문가 등으로「간판개선주민위원회」구성·운영
 -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

8.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총 수량	○ 간판수량 : 1업소 2간판(주거지역은 1업소 1간판) ※ 단, 도로의 곡각지점인 경우 가로간판 1개를 추가하여 설치 가능
가로형 간 판	○ 표시형태 : 판류형 또는 입체형 ○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 ○ 표시규격 ▶ 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
돌 출 간 판	○ 설치위치 :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 ○ 표시규격 ▶ 간판 아래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 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세로크기는 3.5m 이내
창문이용 광고물	○ 2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폭 20cm이하 ○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1층 자사광고에 한정, 면적 0.18m 이하 ○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 ○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 세로 폭 45cm, 길이 3m, 창문면적 1/4 이내
기 타 준수사항	○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 ○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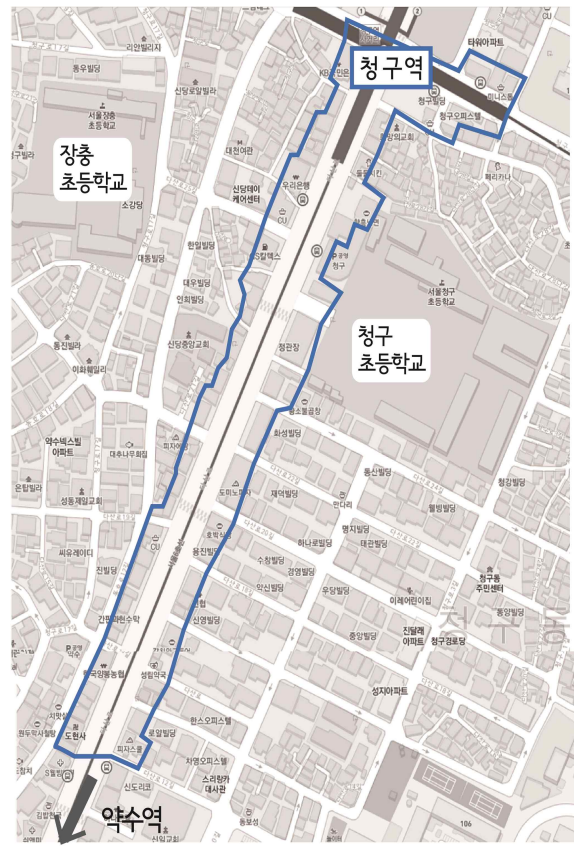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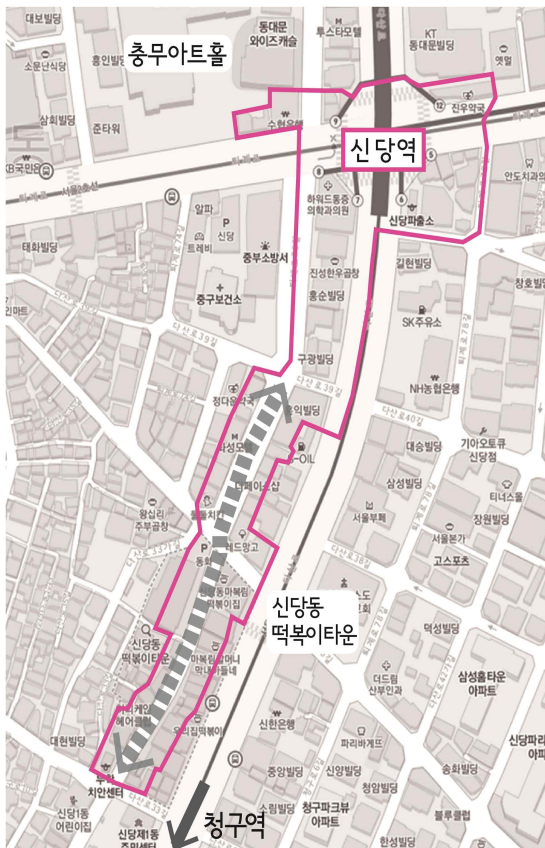
9. 허가 및 신고

- 모든 광고물은 이 규격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m²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10. 광고물 등의 심의

-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11. 위치도면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38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1. 사 업 명 : 명동 만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2. 위치 및 규모
 - 명동 만화의거리(명동역3번출구~서울애니메이션센터)구간내 80개 점포
 -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3. 사업내용 : 불법간판을 만화의 거리 특색에 맞는 우수한 간판으로 개선
4.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9월까지
5. 사업방법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자율추진
6. 소요예산 : 200,000천원(시비 100,000천원, 구비 100,000천원)
 -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의 개·폐업 및 휴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추진내용
 - 만화의거리 특성에 맞는 캐릭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간판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설치
 -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 점포주, 전문가 등으로「간판개선주민위원회」구성·운영
 -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

8.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총 수량	○ 간판수량 : 1업소 1간판 ※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 1. 도로의 곡각지점인 경우 가로간판 1개를 추가하여 설치 가능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 3.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
가로형 간 판	○ 표시형태 : 판류형 또는 입체형 ○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 ○ 표시규격 ▶ 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
돌 출 간 판	○ 설치위치 :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 ○ 표시규격 ▶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 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세로크기는 3.5m 이내
창문이용 광고물	○ 2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폭 20cm이하 ○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1층 자사광고에 한정, 면적 0.18m 이하 ○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 ○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 세로 폭 45cm, 길이 3m, 창문면적 1/4 이내
기 타 준수사항	○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 ○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9. 허가 및 신고

-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m²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10. 광고물 등의 심의

-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11. 위치도면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3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길 1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93-58외 5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길 15	2010.06.28.	남대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1~5)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6. 0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40호

만리제1주택재개발 정비계획·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42호(2009.12.31.)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1-67호(2011.10.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처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의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02-3396-5733)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자 :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종일)

3.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11,392.6	

4. 주요 변경 사유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용적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변경
- 기타 착오로 인한 정정

5.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1,392.6	100.0	
택 지	소 계	9,614.0	84.4	
	택 지	9,614.0	84.4	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	소 계	1,778.6	15.6	
	도 로	1,305.5	11.5	
	공 원	소 계	473.1	4.1
		소 공 원	428.0	3.7
		체육공원	45.1	0.4 교환필지

6.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392.60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5.10	0.40	교환필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613.26	66.83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4.04	26.37	
일반상업지역	730.20	6.40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20	28~34 (31)	주간선도로	일반도로	1,600 (60)	봉래정3정동 (만리동2가11-4)	공덕동 (만리동2가230-1)	총고757 (39.9.18)	
기정	중로	1	-	20	국지도로	일반도로	95	만리동2가 117-4	만리동2가 110	건고560 (63.9.19)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일반도로	58	만리동2가 (11-4)	만리동2가 (10-94)	서고시 09-542호 (09.12.31)	

※ ()는 정비구역 내 면적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구분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공원	소공원	중구 만리동2가 12-53번지	428.0	
기정	손기정체육공원	체육공원	중구 만리동2가 6-1번지 일원	29,682.2 (45.1)	· 중구고시 제2011-67호 (2011.10.27. 착오로 인한 정정) · 교환부지 45.1㎡ (6-9, 10, 11번지 10-26, 32, 35, 45 일부)

※ 최초결정고시 체육공원 29,682.2㎡(건설부고시 제469호, 1987.9.18.), 정비구역 내 공원면적(45.1㎡)은 체육
공원에 포함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103.961	감) 23.718	80.243	
복지시설	어린이놀이터	378.308	증) 54.692	433.000	
	경로당	101.609	감) 6.008	95.601	
	주민공동시설	122.676	증) 70.833	193.509	
	주민운동시설	—	증) 108.115	108.115	
	근린생활시설	1,051.382	감) 64.199	987.183	

※ 건축심의에 의한 변경

9.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만리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1,392.6	공동 주택	9,614.0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178	-	-	178	-	-
			도로	1,305.5							
			공원	473.1							
변경	만리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1,392.6	공동 주택	9,614.0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113	-	-	113	-	착오로 인한 정정
			도로	1,305.5							
			공원	473.1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변경	만리제1 주택재개 발 정비구역	11,392.6	택지	9,614.0	만리동2가 10번지일대	공 동 주 택 및 부대복리시설	31이하	217이하 224이하	50.5 (14층 이하)
기 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법적기준 충족 － 전용면적 65㎡ : 19.1%(34세대) － 전용면적 85㎡ : 64.0%(114세대) － 전용면적 92㎡ : 1.1%(2세대) － 전용면적 114㎡ : 15.7%(28세대) － 합 계 : 178세대						
변 경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법적기준 충족 － 전용면적 71.98㎡ : 29.1%(58세대) － 전용면적 84.97㎡ : 68.9%(137세대) － 전용면적 84.98㎡ : 1.0%(2세대) － 전용면적 95.96㎡ : 1.0%(2세대) － 합 계 : 199세대						
심의완화 사항			● 층수 － 관련근거 : 도시계획조례 제28조 1항 4호 가목 － 완화내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평균13층 이하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 한계선 － 중심지미관지구에 의한 건축한계선 만리재길변 : 3m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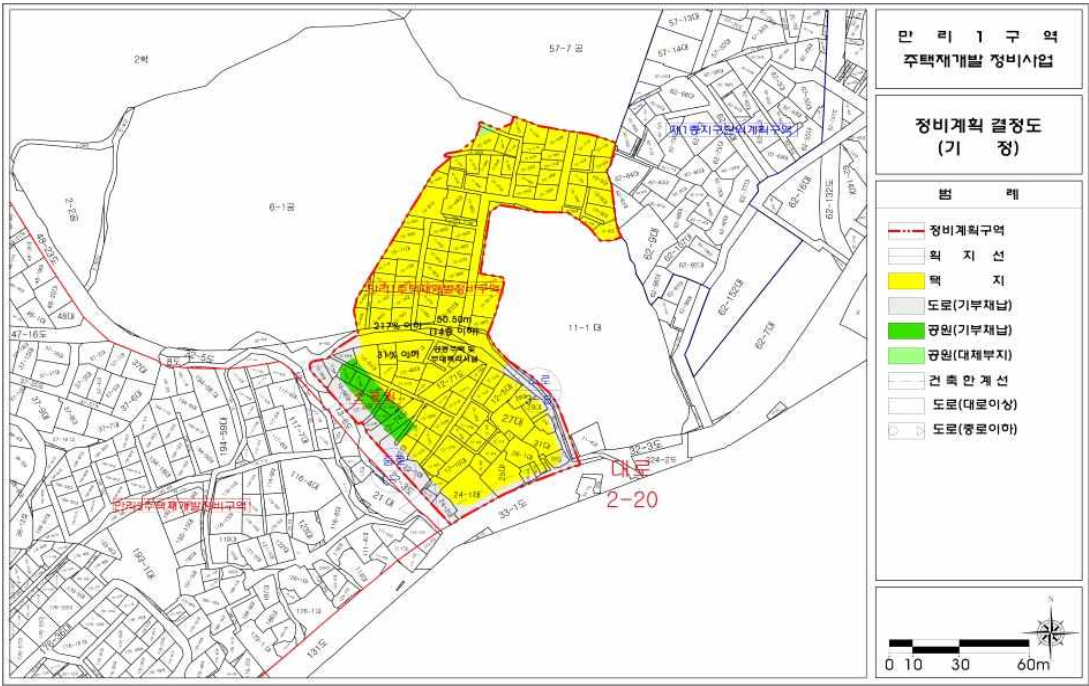
10. 정비계획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 한 검 토 결 과	비 고
			기정	변경		
관리처분방식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만리제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감)10세 대	증)11세 대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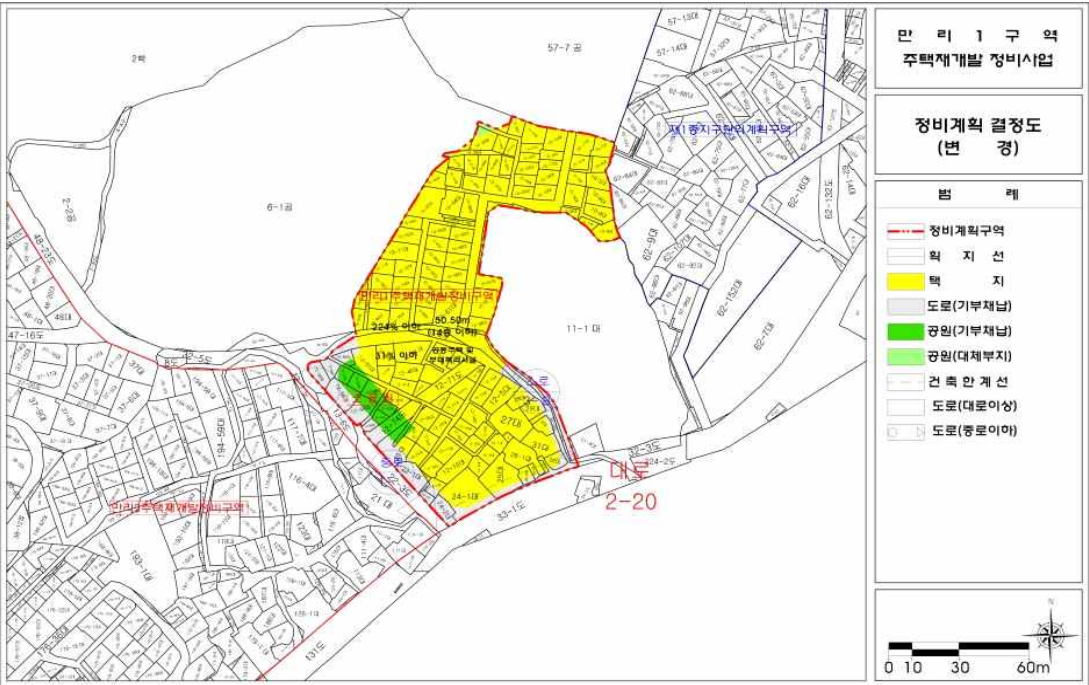
※ 현황 세대수 : 188세대

11. 정비계획 결정도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12. 정비구역 결정도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필지 분할에 의한 지번 변경

13. 관계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